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0

제출년월일 : '92. 11. .

제 출 자 : 속 초 시 장

1. 제 안 이 유

건축법개정('92. 6. 1.) 및 주차장법 개정('91. 12. 14.)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지역실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코저 함.

2. 주 요 골 자

0. 주차장정비지구안에서의 일정규모 이상되는 주차수요 유발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기준 주차대수의 3분의1을 추가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0.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본 건물이 소멸될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안 제15조)

0. 비용납부로 인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점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설치비용 산정기준 보완(안 제16조)

0.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보완(안 제17조)

0.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구조설비 기준의 시행규칙 명문화 (안 제18조)

0. 부설주차장의 일반에의 제공방법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함 (안 제18조의3)

0.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및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가 5대이하인 경우 주차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부설주차장설치를 용이하게 함 (안 제18조의4)

3. 관련법령 개정사항

0. 주차장법('91. 12. 14. 법률 제4437호), 같은법 시행령('92. 6. 30. 대통령령 제13672호), 같은법 시행규칙('91. 4. 26. 건설부령 제482호)

4. 기 타 사 항

0. 입 법 예 고 ―――――――― '92. 8. 25. - '9. 15.(20일간)

0.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 '92. 10. 12.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 건축물 부설주차장 " 을 " 부설주차장 " 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3조(주차장정비지구 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시장은 영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주차장정비지구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영 제6조 제1항에 관련한 별표 1의 기준에 3분의1을 추가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경우 법 제1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의 제목 " 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 " 을 " 인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으로 하고,제1항중 " 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인이 공동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하 "공동주차장" 이라 한다)을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 으로하며 " 건축물 부설주차장 "을 "부설주차장"으로 하며 "300미터"를 "200미터"로 하고 제2항을삭제하며 제3항중 " 24 ㎡ "를 " 18 ㎡ " 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인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규칙 제5조 제3호 및 제5호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적용하며 본 건물이 소멸될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 제1항 중 " 주차장설치비용을 " 을 " 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설치비용을 " 로하며 제2항중 " 영 제6조에 " 를 " 영 제10조 제1항에 "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증을 교부 받은자는 주차장의 점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규칙 제14조를 준용하며 무상사용권교부시 노외주차장 지정은 영 제8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17조 제1항 중 " 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 를 " 영 제6조 제1항의 별표1 비고 제8호의 규정에 의한 " 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업주차장은 자주식으로 당해 건축물 부지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제목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을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구조설비기준"으로 하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며 제2항중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하고 제3항 단서중 " 영 제6조의 " 를 " 영 제6조 제1항의 "로 한다.

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영 제6조 제1항 관련에 의한 별표5를 적용하며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규칙 제11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18조의2 제1항 본문중 " 영 제6조제3항의 " 를 "영 제6조제1항 관련 별표1 비고 제9호의"로 하며 제2항 본문중 " 바닥 및 지붕은 " 을 " 바닥은 " 으로 한다.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8조의3 (부설주차장의 일반에의 제공등) ①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자는 별지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제공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배치도(일반이용 부분표시)
2.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을 기재한 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의 경우에는 면적, 건축연면적,건축물의 용도, 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태를 기재한 건물조서를 포함한다)
3. 토지, 건물등기부등본
4.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에 따른 관리규정(규칙 제8조에 규정한 관리규정)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2호서식의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제공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일반이용에 제공할 경우 주차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1항제4호 관리규정에 의한 관리비(주차요금)를 징수할 수 있다.

④ 법 제1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부설주차장과 당해 시설물종류는 옥,내외시설물로 하되, 그 규모와 일반이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이용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이용에 제공하기전에 일반의 이용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18조의4 (부설주차장의 구조및 설비기준의 예외) ①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규칙 제5조 제6호 및 제7호와 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장의 주차자로 경사구배는 17%이내로 하고,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은 평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차시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가 5대이하인 자주식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차장 진입로 너비는 3.3미터 이상으로서 4미터 이상의 통과도로(막다른 도로일 경우에는 6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전면 도로폭이 인,차도 구분이 없는 12미터 이하인 경우 전면도로를 차로너비로 산정하여 당해 부설주차장 전면도로에 연접하여 주차장설치가가능하나, 자로너비(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와 나목의 자로너비 기준에 따른다)가 도로중심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면도로폭이 6미터이하인 경우에는 반대편 도로 경계선을 차로너비로 보아 설치할수 있다.
3. 부설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부분의 장,단변중 1변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단, 주차구획은 세로로 연접하여 배치할 경우로써 주차구획이 2대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는 제외한다.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 차 형 식	차 로 너 비
평 행 주 차	3.5 미터
직 각 주 차	5.5 미터
60도 대향주차	4.0 미터
45도 대향주차	3.5 미터
교 차 주 차	3.5 미터

4.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물식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 외에 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내지 제9호 규정을 추가로 적용한다.

* [별표 5] 와 [별표 6] 은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신 구 대 비 표

현 행	개 정	비 고
제 3 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제 3 장 부설 주차장	
第13조(주차장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 구역안의 주차장 설치) 주차장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 재개발사업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5의 기준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그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로 확보하여야 할 주차장의 주차대수의 단수가 1대미만인 건축물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8. 12. 8 조례 제1171호)	第13조 (주차장정비지구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시장은 영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주차장 정비지구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영 제6조제1항에 관련한 별표1의 기준에 3분의1을 추가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것을 명할수 있다. 이경우 법 제1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제14조(상업지역외 특정용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거지역,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에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영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그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별표6에서 정한 연면적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상업지역외 특정용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삭 제 "	
제15조 (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인이 공동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이하"공동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 거리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 ②공동주차장 설치는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추후 공동주차장으로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주차장에 있어서는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동주차장은 본 건물이 소멸될 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인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①법 제19조 4항의 규정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200미터 이내로 한다. ② " 삭 제 " ③ ------------------------------ 18제곱미터 ------------------------------. ④제1항에 의한 인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규칙 제5조 제3호 및 제5호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적용하며 본 건물이 소멸될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①시장은 주차장설치 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시장은 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 ------------------------------	

현 행	개 정	비 고
②영 제6조에 의한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 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금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이내로 한다. (개정 1988. 12. 8 조례 제1171호)	②영 제10조 제1항에 의한 -- ③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증을 교부 받은자는 주차장의 점유권을 행사할수 없다. ④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규칙 제14조를 준용하며 무상사용권 교부시 노외주차장 지정은 영 제8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17조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조업주차장은 당해 건축물의 기준주차대수 5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조업하기 편리한 장소에 할수 있으나 그 위치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건축허가시까지 시장이 지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다음사항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배치 및 출입차량 동선 2. 전체 주차장 평면도 및 주차동선 3. 조업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주차 배치 계획) 4. 조업주차면을 다른 주차면과 출입구 등을 별도 사용 관리할수 있는 계획	제17조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①영 제6조 제1항의 별표1 비고 제8호의 규정에 의한 -------------------- 면적의 부설주차장을 --------------------. ② -- 1. ------------------------------ 2. ------------------------------ 3. ------------------------------ 4. ------------------------------ ③ 조업주차장은 자주식으로 당해건축물 부지내에 설치 하여야 하며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건축물안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 폭은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가 50대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폭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기타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8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구조설비기준) ①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영 제6조 제1항 관련에 의한 별표1을 적용하며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규칙 제11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②부설주차장을 --	

현　　　　　행	개　　　　　정	비　　고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당해 옥상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인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8. 12. 8.조례 제1171호)	③ --- ----------------------------영 제6조 제1항 --------------- 부설주차장 ---	
제18조의2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설치기준) ①영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지체부자유자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주차장의 바닥면적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주차장 바닥면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88. 12. 8. 조례 제1171호) ③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주차장 입구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하여야 한다 2.주차장 입구에서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 하도록 한다 ④지체부자유자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18조의2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설치기준) ①영 제6조 제1항 관련 별표1 비고 제9호의 규정에 ---------------- 1. -- 2. -- 3. -- ② ---------------------------- 바닥은 ----------------- 1. -- 2. -- ③ -- 1. -- 2. -- ④ --	
제18조의3 (관리비)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1988. 12. 8. 조례 제1171호)	제18조의3 (관리비) --------------------------------- -- 이경우 법 제1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 제12조 제5항 제13조 내지 제18조와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table>
<tr><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
<td>(별표 5)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table>
<tr><th>구 분</th><th>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 재개발 지구</th></tr>
<tr><td colspan="2">" 내 용 생 략 "</td></tr>
</table>
(별표 6)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table>
<tr><th>구 분</th><th>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 공업지역</th></tr>
<tr><td colspan="2">" 내 용 생 략 "</td></tr>
</table>
</td>
<td>(별표 5) " 삭 제 "

(별표 6) " 삭 제 "</td>
<td></td>
</tr>
</table>

현 행	개 정	비 고
	4.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물식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에 기준외에 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9호 규정을 추가로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비 고
	(see below)	

제18조의4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의 예외) ①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규칙 제5조 제6호 및 제7호와 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장의 주차로 경사구배는 17%이내로 하고,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은 평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주차시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가 5대이하인 자주식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주차장 진입로너비는 3.3미터 이상으로서 4미터 이상의 통과도로(막다른 도로일 경우에는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전면 도로폭이 인,차도 구분이 없는 12미터 이하인 경우 전면도로를 차로너비로 산정하여 당해 부설주차장 전면도로에 연접하여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나, 차로너비(규칙 제6조 제1항제3호와 나목의 차로너비 기준에 따른다)가 도로중심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면도로폭이 6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반대편 도로경계선을 차로너비로 보아 설치할수 있다.

3.부설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주차자부분의 장,단변중 1번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단 주차구획은 세로로 연접하여 배치할 경우로써 주차구획이 2대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는 제외한다.

나.지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 차 형 식	차 로 너 비
평 행 주 차	3.5 미터
직 각 주 차	5.5 미터
60도 대향주차	4.0 미터
45도 대향주차	3.5 미터
교 차 주 차	3.5 미터